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63
----------	-------

발의연월일 : 2025. 8. 8.

발의자 : 김영진 · 박지원 · 허영
박홍배 · 안태준 · 송재봉
강준현 · 임호선 · 김우영
서삼석 · 이학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직계비속등”이라 함)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일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계비속등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 있는데 이로 인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시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경제 활동여부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나이”를 “나이 및 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한 교육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p> <p>② (생 략)</p> <p>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u>나이</u>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 략)</p> <p>3. 기본공제대상자인 <u>장애인</u>(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p>	<p>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u>나이 및 소득</u>-----</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장애인</u>---</p> <p>-----</p> <p>-----</p> <p>-----</p> <p>-----</p> <p>-----</p> <p>-----</p>

수교육비]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